

「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4. 12. 19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최광옥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12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2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10일

-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최광옥 의원)

### 1. 제안사유

○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정책토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제2항)
  - 위원회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⇒ 위원회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,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  
- 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제3항)
  - 구성 운영한다.
  - ⇒ 구성하여 운영하되,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#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광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12월 1일

발 의 자 : 최광옥, 임희무, 엄재창  
김영주, 연철흙, 윤은희  
박종규

## 1. 개정이유

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정책토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제2항)

- 위원회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⇒ 위원회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,  
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나. 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제3항)

- 구성 운영한다.
- ⇒ 구성하여 운영하되,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5조제1항

「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」 제27조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생략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##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.”를 “민간위원으로 하며,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구성 운영한다.”를 “구성하여 운영하되,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공무원, 도의원, 시민단체,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<u>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는 공무원, 도의원, 시민단체,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<u>민간위원으로 하며,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) ① 도지사는 중·장기적인 도민참여 제도와 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해 전문가,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,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도민참여연구회를 <u>구성 운영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3조(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) ① 도지사는 중·장기적인 도민참여 제도와 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해 전문가,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,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도민참여연구회를 <u>구성하여 운영하되,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련법령 발취

## 여성발전기본법

제15조(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,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

제27조(여성위원참여확대)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